#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460

제출연월일 : 2018. 8.

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실과 행정책임성 강화 및 갈등관리를 위한 청렴감사관을 신설하고,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부서개편

- 1) 부서 신설: 일자리창출실, 청렴감사관(안 제4조)
- 2) 국 명칭변경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)
  - 가) 행정지원국 → 주민자치국
  - 나) 건설도시국 → 안전도시국
- 3) 과 명칭변경(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제1항, 안 제7조제1항)
  - 가) 총 무 과 → 행정자치과
  - 나) 문화관광실 → 문화관광과
  - 다) 평생교육과 → 혁신교육과
  - 라) 자치행정과 → 회계정보과
  - 마) 사회복지과 → 노인장애인과
  - 바) 여성청소년과 → 여성가족과
  - 사) 경제일자리과 → 경제산업과
  - 아) 교통행정과 → 교통과
  - 자) 디자인건축과 → 건축과
  - 차) 보건행정과 → 보건과

- 4) 과 직제변경(안 제5조제1항, 안 제7조제1항)
  - 가) (행정지원국) 총무과, 자치행정과, 평생교육과
  - → (주민자치국) 행정자치과, 문화관광과, 혁신교육과, 회계정보 과
    - 나) (건설도시국) 건설과, 안전총괄과
      - → (안전도시국) 안전총괄과, 건설과

### 나. 분장사무 조정

- 1) 기획예산실(안 제4조의2제4호): "감사전반에 관한 사항" 삭제
- 2) 문화관광실(안 제4조의3): 삭제
- 3) 일자리창출실(안 제4조의4)
  - 가)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나) 청년정책기반 마련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
  - 다)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
  - 라)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- 4) 청렴감사관(안 제4조의5)
  - 가) 감사 및 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  - 나) 공직기강 및 청렴에 관한 사항
  - 다)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  - 라) 주민고충 및 집단민원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
  - 마) 공공갈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) 주민자치국(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)
  - 가) 서무, 인사, 자치행정, 구민협력 등에 관한 사항
  - 나) 문화예술, 문화관광,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
  - 다) 교육정책, 평생교육, 도서정책,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 에 관한 사항
  - 라) 회계, 재산관리, 정보관리, 통신 등에 관한 사항
- 6) 복지경제국(안 제6조제2항제4호)

#### 12 (제208회-본회의제2차부록)

- 지역경제활성화, 상·공업, 농·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
- 7) 안전도시국(안 제7조제2항제1호, 안 제7조제2항제2호)
  - 가) 안전정책 총괄, 재난관리,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,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
  - 나) 건설행정, 도로관리, 하천관리, 하수, 오수·분뇨등에 관한 사항

## 3. 근거법규

- 가.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: 2018. 7. 30. ~ 8. 6.(의견없음)